

부산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71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716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430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항소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태욱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5. 12.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0가합4305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73,635,5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2,581,321원, 원고 B에게 51,054,214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8행 이하의 각 “피고 D”을 “D”으로 각 고쳐 쓴다.
- 11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사소한 시비로 구속되어 있는데 금방 풀려난다’는 H의 말을 믿고 D을 대리한 H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❶ D 작성의 2019. 6. 3.자 위임장에는 부산구치소의 접수인 및 D의 손도장임을 증명한다는 문구와 교도관의 날인이 명확히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대리인이 발급받은 2019. 6. 14.자 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D은 늦어도 2019. 6. 3.경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❷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계약체결일에 D의 동생 H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D이 사소한 문제로 구속되어 있을 뿐 머지않아 풀려날 것으로 알았다면 D의 풀려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처럼 매매대금 전액을 급박하게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❸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은 2019. 6. 21.경 H에게 전액 지급되었고, H 작성의 영수증(을나 제4호증)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기재 뿐 아니라 매매대금으로 교부된 자기앞수표가 복사되어 첨부되었는데, 이는 영수증 작성에 관한 일반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일 뿐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의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은정, 판사 이재욱, 판사 박운삼

별지